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7(월)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2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8. 개정, 2023. 9. 29. 시행) 개정
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라.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5조)
- 마. 업무의 대행(안 제6조)
- 바. 점검 및 비용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9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조례 경과 사항

1) 조례 제정 : 2017. 5. 15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 폐지 : 2019. 5. 19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 운영·지원 내용 등 동일)

다.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
-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3) 지원대상(안 제4조)

- 금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4)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5조)

- 지원 내용 : 영치실 안치료,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등

5) 업무의 대행(안 제6조)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시·구 조례의 비교(동일<유사> 여부)

구 분	요 약 내 용		비 고
	시 조 례	구 조 례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 및 빈소마련 ◦ 고인의 존엄성, 공동체의식 ◦ 사회복지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에 필요사항 ◦ 고인의 존엄성 유지 	유사함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장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마을장례, <u>시장·구청장이 장례지원 필요시</u> ◦ 아동학대 사망자로 연고자의 장례 능력부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 사망자 ◦ 수급자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물지원 원칙</u>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 ◦ 매장비용 지원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법 : 없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절차,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지원 ◦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지원 ◦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안실 안치료, 봉안대상자 공고비 ◦ 관외 사망자 운구비 	
지원신청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 없음 ◦ 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사 ◦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점검 	유사 동일함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유사 동일함

마. 검토의견

-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8)의 개정 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함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과 폐지를 거듭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등의 세심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사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0., 2017. 5. 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2조에서 이동 <2015. 7. 20.>]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제목개정 2015. 7. 20.]